

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
자치회관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(이일준 의원 대표발의)

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일준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96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4년 11월 6일

발의자 : 강수진, 고영옥, 박영섭, 이관우,
이일준, 임태근, 임현주, 정기혁,
정병기, 진선아

1. 제안이유

주민자치회가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 풀뿌리자치 활성화 및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주민자치회 위원 정원 조정(안 제6조)

나. 주민자치학교 사전교육 및 이수 효력기간 정비(안 제7조제1항 및
현행 제10조제3항 삭제)

다. 위원의 위촉 정비(안 제9조제1항)

라. 공개모집 신규 신청자 위원 우선 선정(안 제10조제2항)

마. 자치회장의 자격 및 직무대행 등 정비(안 제14조제1항·제4항 및 제5
항 신설)

바. 사무국, 자원봉사자 삭제(안 제15조)

사. 주민총회 개최 시기 정비(안 제19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
다. 입법예고 : 2024. 11. 8. ~ 2024. 11. 12.

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주민자치회는 3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갖추어야 하고,”를 “갖추되, 위원 선정 후”로, “위원 선정 전 6시간 이상”을 “2시간 이상”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2년으로 한다”를 “4년으로 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제1항 각 호에도”를 “제1항에도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제1호 중 “신청하고 제7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”을 “신청한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추천받고 제7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”을 “추천받은”으로 하며,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특정 주요 기관 및 단체, 주민조직별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② 공개모집의 경우 신청한 사람 중에서 신규로 신청한 사람을 위원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 그럼에도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신청자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.

제14조제1항 본문 중 “위원”을 “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위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부회장은 자치회장”을 “자치회장”으로, “없는 경우에 그 직무”를 “없는 경우에 부회장 중 연장자(부회장이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 중 연장자)가 그 직무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자치회장이 궐위 된 경우 후임으로 선출된 자치회장의 임기는 전임 자치회장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제3항에 따른 임기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.

제15조의 제목 “(간사 또는 사무국)”을 “(간사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하고, 같은 항(종전의 제4항) 중 “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간사, 자원봉사자”를 “간사”로, “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”를 “간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19조제2항 중 “연 1회”를 “연 1회 당해 주민자치계획이 완료된 후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자치회장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)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
례 시행 전에 선출된 자치회장에게도 적용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주민자치회 위원 정원) <u>주민자치회는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다만, 구청장은 동별 인구수를 고려하여 위원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7조(위원의 자격) ①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모집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<u>갖추어야 하고</u>,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(이하 “주민자치학교”라 한다)을 <u>위원 선정 전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</u>이어야 한다. 다만, 주민자치학교 이수의 유효기간은 <u>2년으로 한다.</u>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② <u>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</u>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. 다만, 해당 동구의회 의원은 고문으로 참여하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③·④ (생략)</p>	<p>제6조(주민자치회 위원 정원) <u>주민자치회는 3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</p> <p>제7조(위원의 자격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갖추되, 위원 선정 후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2시간 이상</u>----- ----- ----- <u>4년으로 한다.</u>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제1항에도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

하는 경우 신규 위촉과 같은 자격조건을 갖추어 공개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연임 시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 또는 사전에 구청장이 인정한 교육 과정을 임기 중에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.

제14조(주민자치회의 장) ① 주민자치회는 자치회장 1명과 2명 이내의 주민자치회 부회장(이하 “부회장”이라 한다)을 두며,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특정 성별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.

②·③ (생략)

④ 부회장은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자치회장 궐위 시 신임 자치회장 선출 시까지 그 직무를 수행

을 위원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 그럼에도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신청자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.

<삭 제>

제14조(주민자치회의 장) ① ---

----- 해당 동
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위원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④ 자치회장-----
----- 없
는 경우에 부회장 중 연장자(부
회장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
경우 위원 중 연장자)가 그 직

한다.

<신 설>

제15조(간사 또는 사무국) ① (생략)

② 주민자치회는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근무자 배치, 업무, 실비 및 수당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.

③ 주민자치회는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.

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간사,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9조(주민총회) ① (생략)

무-----
----.

⑤ 자치회장이 궐위 된 경우 후임으로 선출된 자치회장의 임기는 전임 자치회장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제3항에 따른 임기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.

제15조(간사) ①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<삭 제>

② ----- 간사-----

----- 간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9조(주민총회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주민총회는 연 1회 개최하
고, 정족수 등 주민총회 운영에
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
한다.

③ ~ ⑦ (생략)

② -----연 1회 당해 주
민자치계획이 완료된 후 -----

-----.

③ ~ ⑦ (현행과 같음)